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617
----------	-------

발의연월일 : 2026. 3. 19.

발 의 자 : 김기표 · 채현일 · 김정호  
주철현 · 임미애 · 이인영  
신정훈 · 윤후덕 · 이원택  
이수진 · 이성윤 · 김남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7월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 난민인정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심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난민의 보호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난민인정 재신청의 비율은 전체 신청의 10%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는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국내체류나 취업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반복하는 경우에 해당함. 이러한 제도 남용은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보호가 절실한 선의의 난민들이 적시에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등 난민제도의 건전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반면, 유엔난민기구의 지침이나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은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없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난민인정 재신청을 제한하여 심사의 효율성과 난민의 보호 필요성 간의 균형을 확보하고 있음.

이에 난민신청자가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반복하는 경우 등에는 신청을 각하하여 심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대한 사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재신청의 허용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난민인정 신청을 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게 심사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제2조제7호, 제17조의2 신설 등).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국적국 또는 상주국의 상황이나 개인적 상황의 변화로 새로운 박해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난민인정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된 경우

다. 그 밖에 제가목 또는 제나목에 준하는 난민인정의 핵심적 부분에 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여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

제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난민인정 신청의 각하) ① 법무부장관은 접수한 난민인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음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2.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제22조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
3. 난민신청자가 면접 등을 위한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각하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난민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적은 난민인정신청각하결정통지서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난민신청자나 그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송달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략)</p> <p><u>&lt;신설&gt;</u></p>	<p>제2조(정의)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중대한 사정의 변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u>가. 국적국 또는 상주국의 상황이나 개인적 상황의 변화로 새로운 박해사유가 발생한 경우</u></p> <p style="padding-left: 20px;"><u>나. 난민인정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된 경우</u></p> <p style="padding-left: 20px;"><u>다. 그 밖에 제가목 또는 제나목에 준하는 난민인정의 핵심적 부분에 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u></p>
<p>제8조(난민인정 심사) ① ~ ⑤ (생략)</p> <p><u>⑥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면접 등을</u></p>	<p>제8조(난민인정 심사) ① ~ ⑤ (현행과 같음)</p> <p><u>⑥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u></p>

위한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심사를 종료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의2(난민인정 신청의 각하)

① 법무부장관은 접수한 난민인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음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2.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제22조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

3. 난민신청자가 면접 등을 위한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각하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난민신청자에

게 그 사유를 적은 난민인정신청각하결정통지서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난민신청자나 그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송달한다.